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증거인멸·○○비자금의 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16. 2008고합367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1인

【특별검사】조준웅

【특별검사보】 윤정석외 2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조권탁외 5인)

【주문】

1.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,000,000(이억)원으로 정한다.

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, 2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2.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